

조세 재정

2017. 5. 10(통권 제47호)

BRIEF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세법연구센터(044-414-2325)



BRIEF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세법연구센터(044-414-2325)

I. 들어가며	02
II.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03
III. 평가	12



I 들어가며

-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제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¹⁾
 -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은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 트럼프의 세제공약은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낮춰 개인의 노동, 저축,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미국이전을 유도하여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폐지 등을 제시함
 - 법인의 미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신규사업 투자비용 전액 공제, 해외유보소득에 저세율로 일회성 과세를 할 것을 제시함
-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선 시 공약한 다수의 세법개정 내용을 담음²⁾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율 인하, 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국경조정세³⁾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할 예정임
-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정책목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1)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시 세제공약은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2016.06.24.를 참고하여 작성함

2)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은 미국 백악관, “Briefing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Steven Mnuchin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Gary Cohn”을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6/briefing-secretary-treasury-steven-mnuchin-and-director-national>, 검색일자: 2017.04.27.)

3) 국경조정세는 수출 시 매출액 과세하지 않고, 수입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수입기업에 부과하여 미국기업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자료: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2016.06.24.)

II 세계개편안의 주요내용

-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개편안은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미국 이전 및 해외 유보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

1. 소득세

- 미국 가정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소득세율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2) 기존의 소득 공제제도 폐지 및 표준공제액 확대, 3) 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족의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함
 - 또한, 세법규정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고자 함
-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서 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10~39.3%의 7단계 누진세율구조에서 10, 25, 33%의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트럼프의 대선공약에서는 12, 25, 33%의 세율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세계개편안에서는 최저세율이 10%로 발표됨
 - 이번 세계개편안에서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세제공약을 미루어볼 때 독신의 경우 과세표준이 37,450달러 이하 납세자와 90,750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표 1>참조)
 - 단, 이는 각종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이므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에 따라 세부담 경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G7국의 일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와 함께 G7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표 2>참조)

〈표 1〉 트럼프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개편안

(단위: 달러, %)

과세표준						현행 세율	제안 세율
단독신고		부부합산, 직격미망인		세대주신고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9,225	0	18,450	0	13,150	10	12
9,225	37,450	18,450	74,900	13,150	50,200	15	12
37,450	90,750	74,900	151,200	50,200	129,600	25	25
90,750	189,300	151,200	230,450	129,600	209,850	28	25
189,300	411,500	230,450	411,500	209,850	411,500	33	33
411,500	413,200	411,500	464,850	411,500	439,000	35	33
413,200	-	464,850	-	439,000	-	39.6	33

자료: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6 House Republican Tax Reform," Table 1, 2016.07.

〈표 2〉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¹⁾

(단위: %)

구분	세율				변동결과
	2013	2014	2015	2016	
미국	39.6	39.6	39.6	39.6	유지
일본	40	40	45	45	인상
영국	45	45	45	45	유지
프랑스	45	45	45	45	유지
독일	45	45	45	45	유지
이탈리아	43	43	43	43	유지
캐나다	29	29	29	29	유지 ²⁾
한국	38	38	38	38	유지 ³⁾

주: 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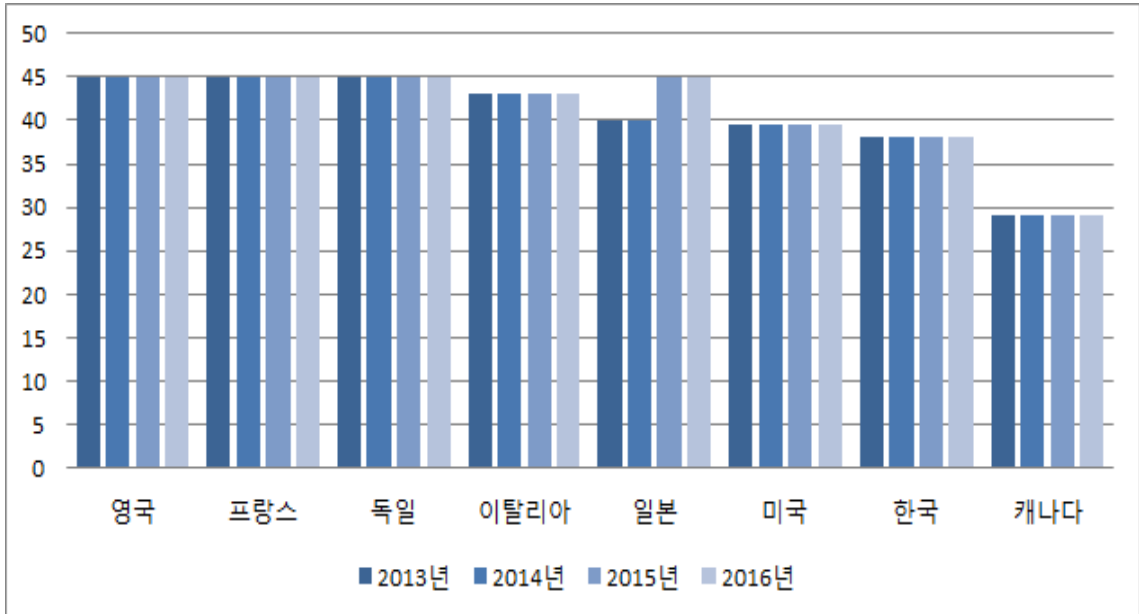
2) 캐나다는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최고세율이 33%로 인상됨

3) 우리나라는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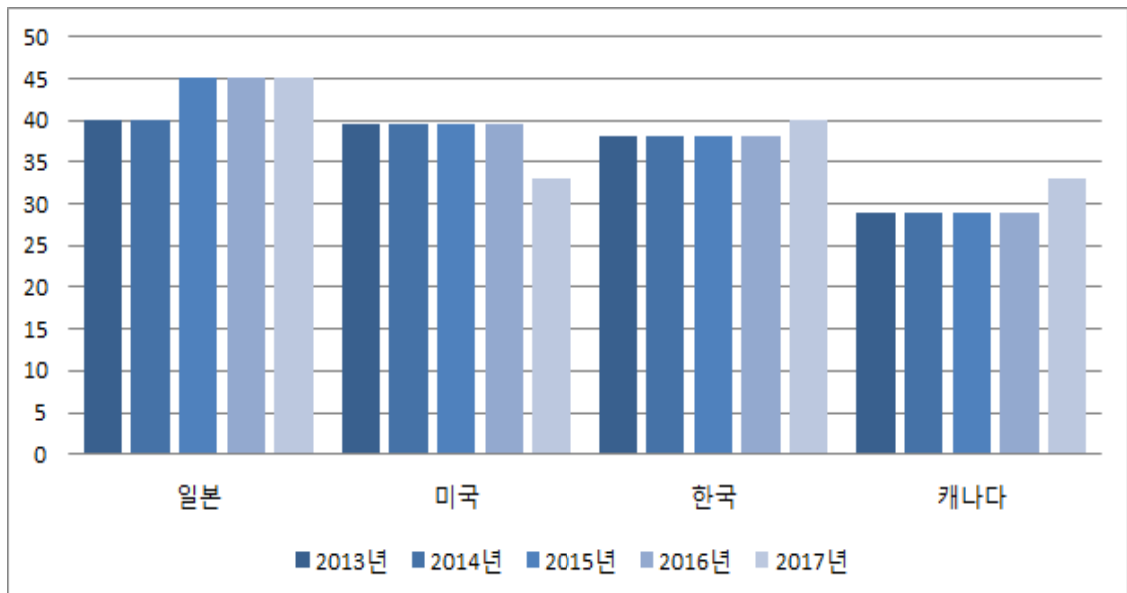
[그림 1]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그림 2]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변경된 국가들

(단위: %)



주: 미국은 세계개편안에 제시된 최고세율임

- ● 둘째, 표준공제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처럼 표준공제액을 인상되면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 시 독신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AGI)이 12,70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25,400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 이와 동시에 현재의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세법은 단순화하는 한편,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
 - 주택담보대출이자, 기부금, 퇴직연금계좌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그 외 소득 공제 항목은 폐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또한, 주정부 · 지방정부 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해 주정부의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주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단, 각 주별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저세율 또한 상이하여 소득에 따라 세부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고세율만 보았을 때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납세부담이 가장 커질 것임
 - 2016년 기준 주정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캘리포니아 13.9%, 오리건 9.9%, 미네소타 9.85%, 뉴저지 8.97%, 뉴욕 8.82%인 것으로 나타남⁴⁾
- ● 셋째, 소규모사업자 가업승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전략 수립과 같은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함
 - 한편, 현행 세법상 상속 · 증여재산가액 통합공제를 통해 일생 동안 543만달러 한도까지 공제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폐지 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이는 상속세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제공하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⁵⁾

4) Tax Foundation, "Stat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2016.02.

- 미국의 경우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상속·증여세 면세점 상향으로 기업상속 공제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인식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도 상속세 폐지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⁶⁾
- ● 넷째,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3.8%의 오바마케어세(Obamacare tax) 폐지를 발표함
 - 오바마케어세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고소득 투자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임⁷⁾
 - 고소득 투자자 기준은 부부합산 신고 시 순 투자소득이 25만달러 이상, 부부별도 신고 시 12만 5천달러 이상, 개인신고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말함
 - ●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한세 폐지를 제안함
 - 최저한세란 과도한 공제 및 감면에 의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저한세 폐지를 통해 정규세액과는 별도로 최저한세를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5) 안중석·송은주·정경화, 『주요국의 기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2014.09. p.6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 상속인 또는 증여인은 일생 동안 납세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상속증여 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음 (Trump Camp, "An America First Economic Plan: winning the global competition," Detroit Economic Club 연설내용 중, 2016.08.08.)

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newsroom/net-investment-income-tax-faqs> (검색일자: 2017.04.28.)

2. 법인세

- ●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 법인세율 인하, 2) 원천지소득과세 제도로의 전환, 3) 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4)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축소를 제안함
- ● 첫째,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p 인하할 것을 발표함
 -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 중 가장 높은 35%로(〈표 3〉참조),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Inversion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Inversion 거래란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실제 회사는 미국에 그대로 위치하면서 서류상의 본사만 해외로 이전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2004년부터 Inversion 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대처하고자 함
- ● 대선 당시 트럼프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동기를 감소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음
 -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찾아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것을 기대함
- ● 개정안 통과 시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의 평균 법인세율인 24%보다 낮은 15%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와 함께 G7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법인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주로 소재하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인 12.5%와 비슷한 수준이 됨

〈표 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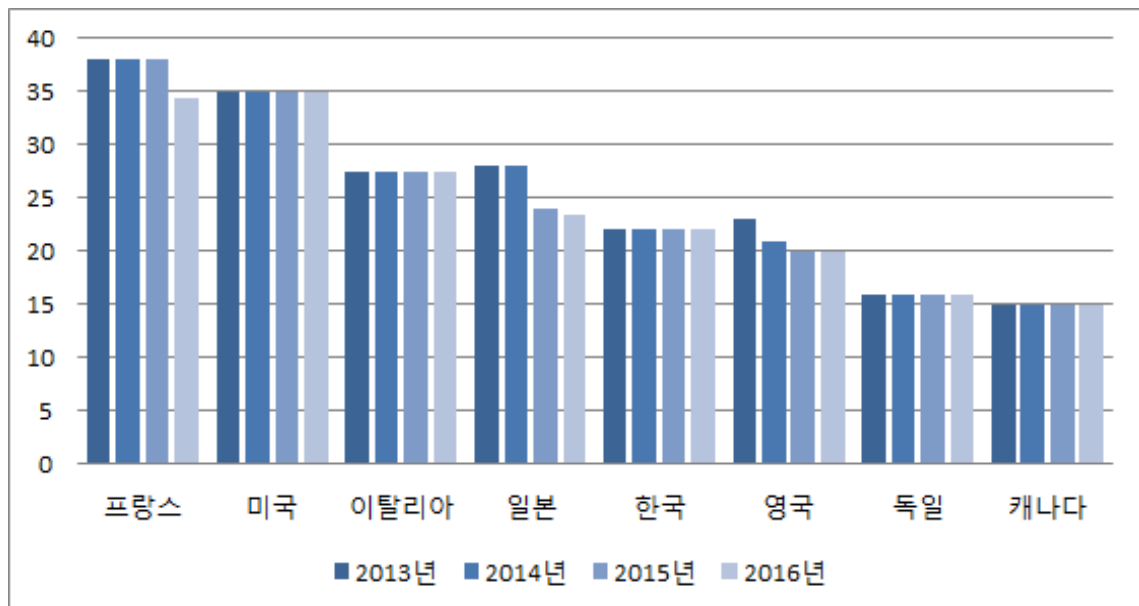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변동결과
미국	35	35	35	35	유지
일본	28.05	28.05	23.9	23.4	인하
영국	23	21	20	20	인하
프랑스	38	38	38	34.43	인하
독일	15.83	15.83	15.83	15.83	유지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유지
캐나다	15	15	15	15	유지
한국	22	22	22	22	유지

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제외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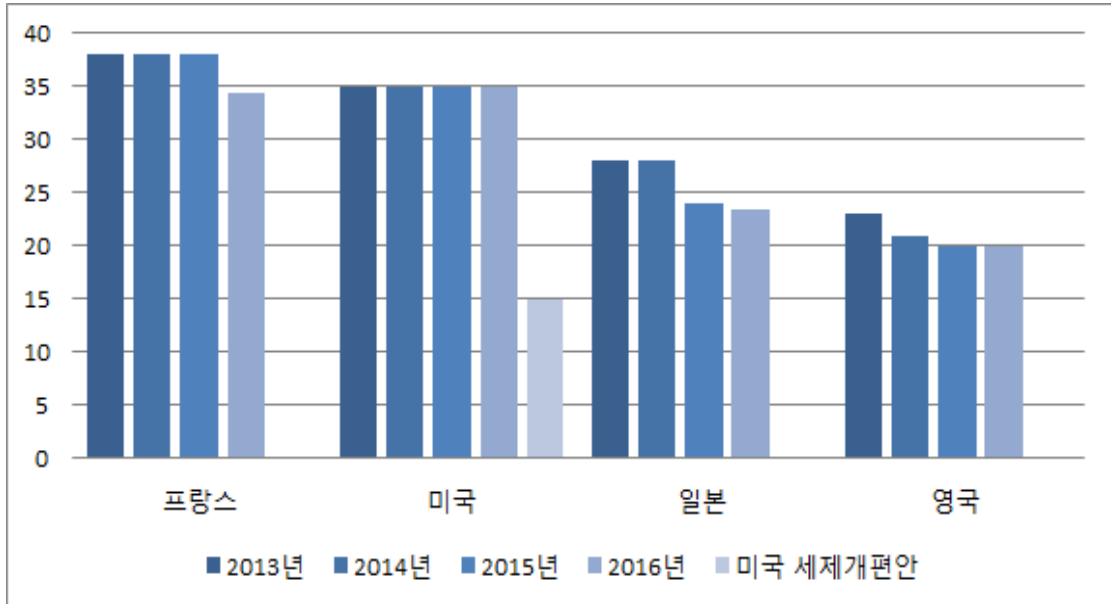
[그림 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그림 4] 법인세 최고세율 변경 국가들

(단위: %)



주: 미국은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최고세율임

- 둘째, 기존의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함⁸⁾
 - 원천국가과세체계 전환 시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과세 없이 국내 송금이 가능함
 - 두 과세방법의 우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전세계소득 과세체계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⁹⁾
- 셋째,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부과하여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함
 - 현행 제도하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소득은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과세를 이연하는 문제가 발생해옴¹⁰⁾

8)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국가에서 과세권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이익에 대해 거주국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음.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란 소득의 원천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주국가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과세방식임

9)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전세계소득과세체계를 운용 중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함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오라클과 같은 IT 기업의 해외누적소득은 총현금보유액의 41%로 추정됨¹¹⁾
- 대선 당시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제시하지 않음
 -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송환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동시에 일회성 과세를 통해 법인세율의 급격한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이자비용 공제 축소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 이자비용은 배당과는 달리 과세소득에서 공제됨에 따라 기업들이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 지적되어 있음
 -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10) 해외자회사 소득은 미국 내 주주에게 배당형태로 지급될 때 과세되며, 미국 내로 송환되지 않더라도 Subpart F 소득(주로 수동소득, CFC가 속한 국가와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소득),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배당간주금액에 과세함. 이를 통해 과세이연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방지할 수 있으나, 과세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음

11) S&P Global Ratings, "Technology: Awaiting the Return of Cash Stockpiles,"

(<https://www.spglobal.com/our-insights/Technology-Awaiting-the-Return-of-Cash-Stockpiles.html>, 검색일자: 2017.04.28.)

Ⅲ 평가

- ●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노동·저축·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함
 - 므누친 재무장관은 본 감세안으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대를 통해 3%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며 이로써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 ●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로 개인의 노동·저축·투자 동기를 증가시키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세회피행위 감소 및 기업의 국내이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함
 - Tax Policy Center(이하 TPC) 및 Tax Foundation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 완화로 TPC는 개인 및 법인의 세후소득이 7.1%p, Tax Foundation은 10.2%p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¹²⁾
- ● 반면, 감세규모에 대한 구체적 정보 및 재정적자에 대한 세부계획의 미흡, 국경조정세의 불포함, 입법화 과정의 난항 예상 등의 이유로 세제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함¹³⁾
 - 대선 당시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임
- ●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 기인한 구체적인 세수감소의 규모 및 재정적자 해결방안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감세 정책의 대안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제도 폐지,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세수감소분을 충당하

12)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 규모 및 재정수지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의 세제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수치임을 밝힘

13) TIME, "The White House Unveiled a Tax Reform Plan. It's Not Really a Plan," (<http://time.com/4756442/trump-tax-reform-plan-mnuchin/>)

- 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 미의회예산국(CBO)은 세수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¹⁴⁾
 - 세수 부족분에 대한 후속대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 미국 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효과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¹⁵⁾
-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¹⁶⁾를 통해 수출에 대해 면세를 확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복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경조정세가 세제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나, 향후 수정안의 논의가능성이 열려있음에 따라 국경조정세의 도입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의회에서의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다수임
 - 민주당은 최저한세, 상속세, 오바마케어세 폐지 등 감세안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공화당 역시 일자리 창출, 조세부담 경감, 미국 내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함에 따라¹⁷⁾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과 궤를 잇고 있으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해 개인의 노동, 저축, 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함

1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Fiscal FactCheck: How Much Will Trump's Tax Plan Cost?," (<http://www.crfb.org/blogs/fiscal-factcheck-how-much-will-trumps-tax-plan-cost>)

15) Reshoring이란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비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기지 등을 해외로 진출하는 Offshoring과 대비되는 개념임

16) 국경조정세는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법인세를 초과하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관련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법임

17)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2016.06.24

-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감세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감세안으로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하여 재정적자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BRIEF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17. 5. 10(통권 제47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